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 공고 제2005-24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61호, '05. 5. 31일 공포, '06. 6. 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종류와 협의요청 시기, 검토서 작성내용·방법, 의견수렴 방법·절차, 재협의 등에 해당하는 사업규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를 정함(안 제7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32개 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이 계획수립·확정전에 환경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대상 행정계획으로 규정하고, 협의요청 시기는 계획별로 “부처협의시, 위원회 심의전, 계획확정(승인)전” 중 특정시기로 구체화함(별표 2, 별표 3).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위 행정계획(별표 2)은 검토서 작성내용·방법, 의견수렴 방법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하위 행정계획(별표 3) 중 동일 법령·동일 목적을 가진 계획이 둘 이상 있는 경우(예: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는 어느 하나의 계획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별표 3의 비교).

(4) 행정계획 관계법령의 빈번한 개정내용(검토대상 신설·변경, 협의요청 시기 변경 등)을 신속하게 반영, 업무혼란 초래·시행령 개정시차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의 종류와 협의요청 시기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5) 그간 토지구제합리화 정책('04. 6. 25일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 등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지예정인 3개 지역·지구(「자연환경보전법」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완충지역, 「수질환경보전법」의 호소수질보전구역)내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의 생태계보전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핵심·완충·전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규모를 종래 “5천m²이상”에서 “5천m² 이상~1만m² 이상”으로 차등 규정하여 규제를 합리화함(별표 4).

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과 방법을 정함(안 제7조의3).

(1)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행정계획 등의 개요, 토지이용현황, 생태적 특성,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의견수렴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2) 다만, 환경영향이 미미한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사업개요, 토지이용현황 이외의 항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수렴 방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함.
- (2) 검토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주민공람은 의무적으로 하되, 공청회·설명회·토론회(이하 "공청회 등"이라 한다)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3) 다만, 의견수렴시 국가안보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성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환경단체·관계행정기관·협의기관·주민대표(필요시)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재협의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변경규모를 정함(안 제10조의2).

- (1) 재협의 대상은 협의후 사업규모가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증가면적의 100분의 30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함.

- (2) 변경내용에 대한 사전협의(주민 등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약식 협의절차) 대상은 협의후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경우와, 100분의 10미만 증가하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증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별표 2 : 후행 행정계획이 있는 상위의 행정계획
- 2. 별표 3 : 후행 행정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입지가 결정되는 하위의 행정계획
- 3. 별표 4 : 보전이 필요한 지역내의 개발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시기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③ 별표 2의 경우에는 제7조의3 내지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 이외에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의하여 검토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의 종류와 협의요청시기 등이 새로이 생기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 30부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7조의3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사전환경성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요

2.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 오염원 현황 및 개발현황(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대안의 설정 및 대안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결과와 영향저감대책 및 사후관리대책

5.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행정계획에 한한다.)

6.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6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견수렴)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 및 제8조의2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 각호의 내용(제5호의 내용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안의 종류
2.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3.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검토서 초안의 공개 범위
5.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와 기간,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청회·토론회·설명회(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 초안, 공청회등의 장소 및 시기 등을 공청회등의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1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공개함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 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환경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환경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지역의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관계행정기관 및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방의회 의원(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환경성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환경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협의기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당 등의 지급)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① 법 제26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조의2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사업규모가 당초 협의한 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사업규모가 당초 협의한 규모보다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지역이 100분의 30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 생태자연도 1등급인 지역
나. 별표 4 가목 (1)의 (가)와 (3), 나목 및 다목, 라목의 (1), 마목 내지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② 법 제26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사업규모가 당초 협의한 규모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미만 증가하는 경우
2. 사업규모가 당초 협의한 규모보다 100분의 10미만 증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목의 지역이 100분의 30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 별표의 협의요청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협의요청시기가 경과하였거나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진행중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249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양개발 등에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시 소요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제21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

나.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청절차 및 지원대상 결정 근거 마련

(1) 미비되어 있는 신기술의 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판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동 조항 제정으로 신기술 개발·사업화를 위한 지

원 절차가 명확화 되고 지원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됨.

다. 해양개발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1)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해양수산발전법의 시행령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 적용의 통일성을 도모

라.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1) 매년 예산이 확대되고, 사업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 필요성 긴급요

(2)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성과관리 및 출연금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함.

(3) 전문기관 지정으로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성과확산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제외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개선

○현행 주권상장 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 중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 산정방법 개선

○자본금 규모 산정시에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토록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

다.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상향 조정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69호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의 자본금 규모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서비스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9개 도소매 서비스업의 중소기업규모기준을 확대

라. 독립성 기준의 강화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206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평가·진단제도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대통령령 제18701호, 2005. 2.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직평가·진단의 세부절차와 조직진단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

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위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18603호, 2004. 12.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0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수도권국내 대기기업의 첨단업종 공장설립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국내 대기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1)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대기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국가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182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을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도를 폐지하고 기존 도와 다른 제주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자치도” 신설

(1)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자유지역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 추가

(3) 제주도는 다른 도(道)와는 상이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지위를 부여받게 됨.

나. 조례 제·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 연령 조정

(1)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제·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9세로 하향 조정함.

(3)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자의 자격과 일치시키고 지방행정에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민조례 청구요건 완화

(1) 청구요건인 연서 주민수 기준이 엄격하여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 제·개폐 청구 발의가 어려워 개선하려는 것임.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도는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구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주민참여 활성화로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이 기대됨.

라. 청구인 명부 공표·열람기간 조정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의 청구 즉시 7일간 열람토록 하여 열람을 위한 내부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촉박하고 열람기간이 짧아 주민의 알권리 침해가 우려되어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개선하려는 것임.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한 날 부터 7일간 열람하던 것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열람도록 함.

(3)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 행정작업을 방지하고 충분한 열람기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청구 조례안 작성권 및 소명기회 부여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청구 취지가 명확히 반영안 될 소지가 있으며, 소명기회 없이 청구각하시 분쟁원인이 될 수 있어 보완하려는 것임.

(2)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던 조례안을 청구인 대표자가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

(3) 주민의 직접입법 형태인 제도취지를 살리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원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도입근거 마련 및 책입성 강화

(1) 지자체의 기구·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구·정원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구·정원 운영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시·도지사의 자치구 아닌 구, 읍·면·동의 하부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아.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금규정 제정근거 마련
(1) 행정서비스 내용은 동일하지만 지역에 따라 요금편차가 심하여 지방행정의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어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세외수입의 증대효과가 기대됨.

자. 수수료 이의신청 기간 조정

(1) 타 법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보다 짧아 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2) 사용료 등의 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 함.

(3)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타 법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간과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차. 지방 4대 협의체의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

(1) 지방에 관한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대표의 참여기회

가 미흡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전국적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통합하여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중앙·지방 상호간 파트너십 형성으로 원활한 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근거 마련

(1)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자치권의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및 행정·재정운영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 다른 시도와는 상이한 행정체제(행정계층), 자치권, 각종 행정권한의 특례를 부여받게 됨.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334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의 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인증용도

- 1)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 콘크리트용
- 2)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 방지층 및 차단층용
-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다. 인증심사 기준

- 사업장심사 : 파쇄, 분리·선별시설, 품질시험 설비 및 인력
- 품질검사 : 용도별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라. 기타 사항

- 인증기간 : 3년(사후관리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환경부 공고 제2005-23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전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 31, 법률 제 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수질오염경보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도입, 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에 따른 조류예보 발령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나. 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을 종전 시행규칙에서 이동하여 규정(안 제37조)

다.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대상 개발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을 정함.

○ 개발사업은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및 그 밖의 사업으로서 항만·철도·도로사업을 제외한 에너지·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관광단지·산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14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신고대상사업으로 정함(안 제39조제1항, 제2항).

○ 사업장은 제철·섬유염색시설 및 그 밖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1-1호)의 중분류에 속하는 목재·화학·고무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비점오염물질 과다유출 우려 업종 10개 업종으로서 사업장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의 사업장을 신고대상 사업자로 정함(안 제39조제3항).

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안

제42조)

- 하천수질기준, 호소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
- 지질·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지정
- 지정절차는 수질기준초과지역 파악, 비점오염기여율 산정, 지정범위 설정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도록 함.

마. 휴경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안 제43조)

- 고랭지 경작자에 대한 경작방식의 변경·휴경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을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 여부 확인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47조).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로 확대함.

- 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 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 이전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14조제1항제1호)
 - 개선 또는 보수, 행정명령(조업정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중지하는 경우
 -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감소된 경우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개선완료보고서 및 배출시설변경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4조제2항)

아. 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사업자가 개

선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추가 적용(안 제17조제1항)

○ 이 경우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규모별 금액을 더하여 부과

자.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비용교부율을 100분의 20으로 조정(안 제31조제1항)

환경부 공고 제2005-237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 31, 법률 제 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아울러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비점오염원관리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종류로 규정(안 제18조)

○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나. 사업자 등이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에 측정기기 가동시간 및 측정기기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안 제28조제1항)

다.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의무 규정(안 제29조제2항)

○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전산망에 전송된 자동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안 제29조제4항)

마.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설치·운영(안 제30조)

○ 환경관리공단에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장의 기술지원은 각 지사별로 실시

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은 고시로 규정(제 30조제2항)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배출시설변경보고서) 서식과 제출시기 규정(안 제32조)

○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 시기

-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거나 가동을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중지하기 시작한 때, 폐수를 위탁처리하거나 방
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
터 24시간 이내

-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
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자가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이
외에 소재지 변경,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사항으로 규정(안 제
57조제2항)

자.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안 제74조)

○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추가

차.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시기·설치기준 및 관리자
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안 제48조제1, 2항)

○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강우유출
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전까지, 공
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
치하도록 정함.

○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자연형과 장치형시설의 특성
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규정

카. 비점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안 제49조)

○ 관리담당자 지정, 강우 전·후 관리사항 및 관리상
황 기록

타.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및 변경
승인사항(안 제53조)

○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후 2년내에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받은 사항 중 개발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
하거나, 저감대책사업비가 100분의 15이상 줄어드
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함.

파.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시
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0조)

하. 경작방법 변경·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고랭지
의 기준을 해발고도 400m이상에 위치하는 경사
도 15%이상인 경작지로 정함(안 제56조).

환경부 공고 제2005-24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도록 한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규모를 완화하고
설치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종류를 조정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규모를 연간폐

기물 발생량이 2만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로 완화하고,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함.

나.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 대상 시설에서 삭제함.

다.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서 설치하여야 할 소각시설에 대하여 인근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택지가 포함된 복합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분 전단중 “또는”을 “으로서”로 하고 “되거나”를 “되고”로 하며, 후단 단서의 내용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또는 자원비축 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로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산업 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증설인 경우에는 증설하더라도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만톤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이 경우 폐기물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활용되는 양은 이를 제외하며, 다만, 택지가 포함된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생

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택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후단에 “다만,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동일 시·군·구 지역내 의 다른 산업단지 등과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소각시설”을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다만,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동일 시·군·구 지역내의 다른 관광지·관광단지와 공동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라목중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이하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폐기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협약서(영 제3조제2항제1호 가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2항 후단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후단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제2호 가목 및 나목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제7항 내용중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각각 2005. 3.31, 2005. 9.14.)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횟수, 지원시기에 대하여 지급명령 이전에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의견을 회신토록 함.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지원토록 명하며,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동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자체에 지급토록 규정함.

나. 지원사업은 지원수수료가 징수되는 기간과 일치시키되, 관리계좌에 지원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계속토록 하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별 시행조건, 지원금의 배분기준 등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전기요금보조사업, 홍보사업, 육영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의 지원규모 및 대상을 정함.

라.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유치지역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그 외 시설물 등의 표시, 지원금 등의 사용내역 보고,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서식,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정함.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입회 문의

TEL : (02) 852 - 2291 (代)